고흥군의회 공고 제2026－2호

「고흥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고흥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안 제7조, 안 제8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마.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위원회 운영(안 제10조 ~ 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1. 20. ~ 1. 26.(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과장)

2) 전화: 061-830-6097, 팩스: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고흥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고흥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흥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고흥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 및 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위원회 설치)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고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포상)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고흥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고흥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8조, 제14조, 제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 성 자	경제산업과장 김춘원
연 락 처	061-830-5320

[붙임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흥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